

학술심의 위원회 규정

제정 1994. 04. 25.
제7차 개정 2022. 04. 20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 학술심의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학술연구 및 연구 기금의 조성관리, 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술연구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
2. 연구비의 운영관리 계획 수립
3. 연구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
4. 연구주제 및 연구자의 선정과 연구비 배정
5. 연구비 관리규정 제2조가 정하는 연구비
6. 연구결과의 분석평가
7. 학술보고서 및 논문집 발간
8. 학술연구실적물의 평가에 관한 사항
9. 교내·외 교원연수, 연구년제 자격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심의('99. 5. 20)
10. 기타 총장이 심의 의뢰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위원회는 **교무연구처장, 기획처장**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**교무연구처장**이 된다. (개정 2005.8.30, 2007.10.29., 2019.06.25., 2022.04.20)

제4조(임기)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제5조(소집과회의)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.

제6조(회의록작성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기피사항) 본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의 연구계획 및 연구실적의 심사, 심의평가에는 참여하지 못한다.

제8조(간사 등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.

제9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0조(소위원회)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부칙

이 규정은 199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1996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1997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199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915, 2005.8.30)

이 규정은 2005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1133, 2007.10.30)

이 규정은 2007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330, 2019.06.25)

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257, 2022.04.20.)

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